

제424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2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긴급현안질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추가)

##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질의 .....	3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9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	30
1. 긴급현안질의 .....	36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어제 판결문입니다. 87쪽 분량인데요. 제가 전직 판사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죄,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무죄다, 반대 논리는 49쪽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취지 과기환송에 대한 골자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만 반대 논리는 소개되지 않아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반대 논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어제 반대 논리도 충분히 읽었습니다. 잘 설명해 줬어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하세요. 빨리 진행합시다.

○조배숙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박준태 위원 질의시간에 하세요, 질의시간에.

○유상범 위원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조희대 원장이 반대 논리도 충분히 읽었어요.

○장동혁 위원 질의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김 다 빼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조배숙 위원** 지금 다 공표됐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다.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충분해요.

○**박준태 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

○**박은정 위원** 현안질의에 도움이 돼요.

○**조배숙 위원** 뭐가 도움이 돼요!

○**장동혁 위원** 뭐가 도움이 돼!

○**박은정 위원** 왜 반말하세요!

○**박준태 위원** 각자 읽어 보면 되잖아요!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해요, 국민들이!

○**조배숙 위원** 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유상범 위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반대 논리 설명했어요. 뭘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위원장 정청래**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 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장내 소란)

선례나 다수 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히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

○**유상범 위원** 그거 항소심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좀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기서!

○**조배숙 위원** 뭘 기다려요!

○**장동혁 위원**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면 돼요.

○**박준태 위원** 그렇게까지 읽어요? 읽으려면 균형 있게 읽으세요. 찬성 의견이 10명인데요!

○**유상범 위원** 질의시간에 하면 뭘 걸 왜 여기서 그런 판결을 읽냐고!

○**위원장 정청래** 좀 기다려 보세요.

○**조배숙 위원**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유상범 위원** 기다리고 말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진행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다수 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확장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 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등등, 제가 이 판결문의 다수의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하셨어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유상범 위원 분량이 많으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좀 하세요.

어제의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 거지 대법관이 뽑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법원 대법관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가 높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안질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 1. 긴급현안질의

(10시05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어서 차관으로 대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두 달 전에 약속된 1박 2일 공식 일정이 있다 하여 급히 상경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7분으로 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예.

○유상범 위원 몇 분이요?

○위원장 정청래 7분.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춰서.

○유상범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말 하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행정처 차장님, 어제 판결이 나고 기자들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왜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두고 우리가 그 결과를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는지……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서, 1심에서 수긍할 만한 판결을 두고 ‘아,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가 나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안타깝고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반대 이유가 다수 의견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하지요. 차장님,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반대 논리가 판결 이유에서 훨씬 더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논리를 짧게 얘기하면 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안타까운 것은요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 어제 판결이 최종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에 관해서 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면서 이제 다시 파기환송 돼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판결이 나더라도 아마 재상고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선에 개입한다고 얘기하는데 6·3·3이 원칙 아닙니까? 6·3·3이 원칙이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대선 직후에 1년 안에 끝났어야 되는 사건이 1심에서 2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하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1심이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대선판에 법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이 2년 이상 늘어졌던 겁니다.

○**박희승 위원** 검찰이 중인 신청을 많이 한 건데……

○**장동혁 위원** 송달 안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희승 위원** 재판은 매일 나갔는데요.

○**곽규택 위원** 경고 주세요, 경고.

○**박준태 위원** 방해하지 마십시오.

○**장동혁 위원**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특혜인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협박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당연히 의견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판

단을 두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차장님, 현재 재판관은 헌법과 관련 법에 따르면 정원이 몇 명으로, 정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재판관이요?

○장동혁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9명이 안 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까? 지금 법상 7명 이상이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결론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장동혁 위원 헌법에 정수를 9명으로 둔다 하더라도 9명이 없으면 기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장동혁 위원 두 번째, 대법원 대법관은 몇 명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장님을 제외하고 열세 분이시고요 그중의 한 분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위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대법관 2명이 공석이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은 모든 재판을 멈춰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건 정수입니다. 정수와 몇 명이 심판이나 재판을 개의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 개시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 몇 명이 필요한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장동혁 위원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 국무회의는 멈추는 겁니다, 아니면 국무회의를 어떤 정수로 개의할 수 있고 어떻게 의결하는지는 따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왜요? 지금 국무회의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14명, 그러니까 헌법에 15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15명 밑으로 내려 가지고 14명으로는 국무회의 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 절차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들고 국무회의 무력화시켜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지요.

헌법에 15명 이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구성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에 9명으로 돼 있다면 그러면 8명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7명 이상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같은 경우는 6명, 나머지는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이 조항을 가지고 꼼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무위원 14명 이하가 참석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한 것이 77회 중 열아홉 번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꼼수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법도 바꾸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전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살리는 꾀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선에서 패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쪽이나 잘하세요.

○**박범계 위원** 질의가 아니라 무슨……

○**장동혁 위원** 질의했어요.

○**박범계 위원** 아니야, 그거 질의.

○**박준태 위원** 질의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중얼거리지 말고 말 좀 해, 제대로.

○**장동혁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의 보충 강의가 있으니까 저는 나갈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이 보충 강의가 있다 하여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방금 어제까지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자가 오늘 국회에 와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문을 제가 쭉 읽어 봤는데 알맹이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 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 내겠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요 ‘당신은 대통령권한대행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관권선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런 비난을 듣고 있고 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또 심리에 충실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는 상황을 보고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하고 이견이 심한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소부 절차를 대법원이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도 우리가 통상 대법원 사건 처리하는 데 관례가 있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처리한 것을 과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지 특히 법률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대법원의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차장님은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1년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10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박희승 위원 10건도 안 될 때도 있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넘을 때도 있고……

○박희승 위원 10건 넘으면 많이 했다 그리고,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박희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장동혁 위원님도 아까 언뜻 언급했지만 6·3·3 원칙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현실 운영에서는 훈시규정 정도로 해서 심리를 충실히 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러한 대법원 과거의 소수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6·3·3을 지키지 않는 사건 처리 예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파기한 이번 사건도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 가까이 걸렸고 그것도 1심에서도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항소심에서조차 또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 이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1심이 이렇게 길어졌던 것도 검찰 스스로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금 법원의 지적을 받고 공소장 변경을 또 하고 계속 그랬던 것인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말 제대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공소장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각하 판결을 하든지 공소기각 판결하든지 해서 공소권 남용을 좀 견제해야 되는데 저는 법원이 그런 역할을 처음부터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심을 검찰이 오랫동안 증인 신청하거나 공소장 변경하거나 이러면서 2년 이렇게 끌다가 갑자기 이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6·3·3 원칙 내지는 공직선거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고등법원 사건부터 심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대법원 판결은 석 달 내에 끝내라는 거지 한 달 내에 끝내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초고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세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기록 양도 제가 알기로는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장님, 이거 대법관님들 기록 다 읽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당연히 기록을 읽어 보시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면 대법관님들이 지금 계류 중인 병행 사건을 보통 몇 건씩 가지고 계십니까, 주심당? 한 몇천 건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상당히 많은 사건 수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박희승 위원 그런 사건들도 다 중요한 사건이지요,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 다 제치고 지금 이 사건만 기록 검토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벌써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의심을 사는 것이지요. 더구나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또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난 것을 대법원에서 손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판사 오랫동안 하면서. 보통 1심에서 무죄가 난 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꾼 걸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뒤바꾸는 경우는 가끔 봤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손대서 유죄로 뒤바꾼다?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승 위원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대법원이 사실심을 존중한다는 그런 원칙도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왜냐하면 대법원도 최고기관이지만 고등법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심 최고법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례가 이미 형성되어 왔는데 유독 이번 사건에서만 잘 하지 않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난 것을 대법원이 뒤집었다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금 법률심 아닙니까?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인정이야 항소심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대법원에게 권한이 부여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것도 지금 늘 논란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형사소송법 삼백몇 조입니까, 383조인가요? 참고2에 보면 대법원은 사실심리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판결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만 손대게 되어 있고 사실심을 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되는 사건.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드려서 지금 더구나 무죄 난 사건을 유죄로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자초합니까? 저는 이게 정말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 올려 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희승 위원 이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청래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제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나…… 피고인이 정치인일 경우에 정치인의 지위나 이념·성향에 따라서 그걸 보고 판단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법리를 보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배숙 위원 이번 이러한 그 태도들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그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차장님, 국회의원 중에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전 의원은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의원은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기부행위 또 죄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뇌물수수 혐의 그래서 의원직 상실했어요. 이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거짓말 때문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이 있어요.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 만들어 가지고 허위 인턴증명서 내 주고 실제로 인턴 했다 이렇게 거짓말해 가지고 유죄 판결받았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총 3년 8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애초에 국회의원, 공직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들이 임기의 80%를 채우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대선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법원의 이 판단이 지금 누구를 대통령 안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리에 따른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 말처럼 부당한 선거 개입, 대선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전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했어요. 그러면 대법원이 총선 개입한 겁니까? 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같은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수없이 법률 위반하고 그리고 또 처벌받고 그리고 또 의원직, 자치단체장직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방선거 개입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왜냐?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또 어떤 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어떤 우리 법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칙하에서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광상도 전 의원은 법률 위반 혐의로 인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세지니까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한 채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국민한테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낸 것이 잘못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차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기록을 다 봤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록이 방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을 40년 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검토하는 사건들도…… 한 달에 가지고 있는 사건이 몇 건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재판부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한 300건, 400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아니, 이분들은 오랫동안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기록을 보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신속하게 1심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굉장히 정독을 했다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그래서 검사의 상고이유서, 변호인 답변서·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자체 없이 파악·검토를 했다. 그리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많이 축적된 판례와 법리 그리고 또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언제 다 봤느냐 그러니까 부실하게 된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은 충분히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달해 드렸고요.

대법원 판결 중에 보충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거기와 마찬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한 가지 기우에 불과하고요. 판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판결이 파기환송이 되면…… 지금 고등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언제쯤 이 심리를 하고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것도 고등법원의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정말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고등법원에서 좀 신속하게 충분히 심리를 다해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차관님, 어저께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에 직면해 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국무회의의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걸 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2007년도인가요, MB 시절에 그런 경우에 행안부에서 권위된 것이 어떤 예외적인 사유로 이렇게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건 정족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결이 되고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고 국무회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을 비춰 보게 되면 15인 이하가 출석하는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지금 질의 도중입니다만 양 간사 간 협의하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청을 해 와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또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려면 양 간사와 또 협의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의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이 있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가시고요. 그것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빨리 하세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그게 처리되었던 기간들에 관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료제출 요구도 위원장한테 이렇게……

○박균택 위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에게.

○**박균택 위원** 다 들으신 걸로 압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해당 기관에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정말 국민들이 참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온갖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지하통로 출입하게 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피고인을 피고인 좌석이 아니고 중간에 앉히게 하고 이런 특혜를 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1일 날 선고된 법원의 이 사법 쿠데타 정말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예외만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또 초스피드로 빛의 속도로 재판을 선고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참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일 날 이 판결을 보고 느끼는 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법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줬어요. ‘대법관들이 정치 모리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 대법원 판사, 대법관님들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귀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주장할 정도로 심각하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이번 5월 1일 사법 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정말 땅에 물어 버렸다, 정말 내팽개친 판결입니다.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판결에 대해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차장님, 혹시 제2 인혁당 사건 생각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성윤 위원** 제2의 인혁당 사건은 1975년 4월 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75년 2월 달에 선고되자마자 다시 한 달 보름 만에 대법원이 딱 하루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바로 선고까지 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8명 사형 선고입니다. 대법원이 사형 선고 확정하자마자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8명을 사형 집행합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이라고.

저는 어제 대법원이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심판 내규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원칙이 10일 이내에 공고하게 돼 있지요, 전합을 열려면?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재판연구관들의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지요, 검토보고가?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이성윤 위원** 이런 것 지켰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 재판기록은 다 봅니까, 아니면 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를 다 봅니까? 기록을 봅니까, 검토보고서를 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관님들께서요?

○**이성윤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연구관들의 검토보고서도 보시고 기록도 다 보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기록이 언제 대법원에 왔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상고기록 접수가 된 때가 3월 28일이었고요. 그때서부터,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전자사본화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본화 조치를 취해서 바로 기록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7만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7만 쪽을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고요? 공보 자료 보니까 공판기록을 기초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기록을 안 읽었다고 봐요. 사람이면 한 달 만에 다 기록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전합에 넘긴 지 9일 만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합에 넘겼습니까? 이 내규에 의하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저도 대법원에 사건이 있습니다. 2년 째 재판 않고 있어요. 소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두 우리 사건도 전합에 넘겨서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사건도 저와 관련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재판을 자의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인혁당 사건처럼 예외만 적용해 가지고 하루에, 이를 만에 심리했지만 결국 7만 쪽이 되는 기록을 잠깐 심리하고 정말 빛의 속도로 판결을 내려 가지고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재판에 간섭하고 국민들의 리더 선임권,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 버린 겁니다. 이건 제2의 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독재 권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이건 법원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러니까 법원이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법원이 할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 내부에서 조차 저한테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 법원 판결문의 이런 반대 의견 중에 제가 감동적인 것이

있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정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이 더 폐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례적이잖아요. 정말 윤석열 12·3 내란도 실패했지만 이번 법원의 5월 1일 사법 쿠데타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알아요, 법원이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 죄다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다수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 저항에 직면해서 이번 쿠데타는 반드시 실패하고 법원은 법원 개혁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판사이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전에 독재 시절에 간첩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일치한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베껴서 판결문을 쓴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흑역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위원장 정청래 이를 질타하는 한 전직 판사의 글을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 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 온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 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갈한 전직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분이? 문형배 재판관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법원의 흑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 판사들이 한번 되새겨 볼 그런 대목이지 않은가라고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진우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주진우 위원 저는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관련된 것은 제가 그냥 원칙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시기가, 어제 시기를 가지고 계속 선고 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재판을 1심에서부터 2년 2개월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는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다든지 이런 수법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에 끝났어야 될 재판이 길어지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근거도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이건 법 규정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에는 강행 규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6·3·3원칙을 규정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처럼 규정 체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법원 판결만 놓고 보면 1심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완전히 같았는데 2심에서 유죄인 것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면서 사실은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어제 확정이 됐어야 맞는 사건이 이렇게 2심에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늘어지게 됐는데 그 또한 사법체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관들이라면 저는 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데 사과는커녕 어제 오히려 최상 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로 화답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또 국민을 이겨 먹겠다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 안 했다라고 함으로써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가 그때는 판례까지 변경되면서 다수의견 7명, 소수의견 5명으로 무죄로 기사회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희색이 완전히 만연했었는데 어제는 10 대 2로 다수와 소수의견이 갈렸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법 쿠데타니 어찌니 하면서 사법부만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결국 어제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백현동은, 당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했던 것은 물론이고 방탄용으로 탄핵도 남발했었고 또 이제는 집권하면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해서 보복을 또 예기하고 있고 대법원도 겁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급기야 오늘은 또 셀프 사면용으로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안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정치인들도 많은데 벌금 100만 원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을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 놨고요. 심지

어 허위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고 하는 판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난 대선에서 기소됐던 사건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 딱 1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고 총선에서 반칙을 하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기대선 국면이긴 한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될 때 쌍방울그룹 임직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이낙연 후보랑 경선 중간이었거든요. 거기에 임직원으로 쪼개기 후원을 해서 9000만 원을 이재명 후원 계좌로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혜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대선에 반칙했던 불법 자금 문제가 다음 대선까지도 아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다음 대선이 일어난다? 저는 그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건이 많은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았어요. 받아서 사실상의 최종심인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수사의 속성상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이득을 봤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완전히 최측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들어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다라고 볼 수 있는 명태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일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몇 년간 멈춰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대선 전에 가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실관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곽규택 위원 그냥 하세요.

○조배숙 위원 아, 또 시작이시네.

○주진우 위원 변론을 또 하시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뭘 또 껴.

○조배숙 위원 또 뭐 강의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님 방금 발언 중에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맞는 거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그건 평가에 불과한 거지, 그걸 가지고.

- 곽규택 위원** 그게 사실관계와 무슨 상관이에요.
- 유상범 위원** 그게 무슨, 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조배숙 위원** 아니, 왜 발언을 평가하십니까?
- 주진우 위원** 사법부의 입법부 침탈은 그러면 합당한 말입니까?
- 위원장 정청래** 자, 주진우 위원은……
- 주진우 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도 존중 안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주진우 위원은 예상한 것마다 다 틀리더구먼요. 5 대 3, 4 대 4, 헌법 재판 이거 틀리고 파기자판 주장했는데 그것도 틀리더군요.
-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조배숙 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파기자판 이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사법부 침탈입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간에 하세요.
- 유상범 위원** 개인적인 질의 시간에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뭘 사실관계……
- 주진우 위원** 파기자판은 규정상 가능한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어디서 평가를 해요, 왜?
- 위원장 정청래**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같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법부를 침탈한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 주진우 위원** 본인이 왜 평가를 합니까? 본인이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 유상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법부 판결은 존중한다는 걸로 시작을 해야지.
- 위원장 정청래** 지금 헌법은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국정감사를 부활시켰어요.
-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부총리 탄핵한 것은 행정부 침탈한 것 아니에요? 최상 목 부총리를 왜 탄핵합니까?
- 조배숙 위원**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넘어서는 겁니다.
-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주진우 위원이 파기자판이라는 말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도 사법부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주진우 위원** 제가 국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주진우 위원** 침탈이지요.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 가지고.
- 곽규택 위원** 침탈 맞지요! 뭐가 적절하지 않아요?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 곽규택 위원** 딱 맞는 말이구먼.
- 조배숙 위원** 아니, 왜 위원의 발언을 평가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
- 조배숙 위원** 본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반말 안 했어요. 들어 보세요.
- 주진우 위원**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조배숙 위원 이게 무슨 회의 진행입니까?

○박준태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위원장석에 앉아서 평가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주진우 위원 법원 판결 가지고 현안질의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조배숙 위원 본인이 재판장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주진우 위원 이 현안질의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국회법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땐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박균택 위원 차장님 자체야 훌륭한 분이지만 대법원을 대신해서 나왔으니 진솔한, 솔직한 질문을 내가 안 할 수가 없군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고법 사건 판결된 후에 상고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기록이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보통 10일, 20일씩 걸리지요? 기록을 정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저희 내규에 따르면은 공선법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하는 예규 규정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기록이 송부될 수 있었는지, 이건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따로 지시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박균택 위원 알아서 그냥 고법에서 그렇게 빨리 갖다 바친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사건기록이 몇 페이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6만 페이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7만 페이지라고 하던데요. 페이지까지는 모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공판기록이 2만 5000페이지 정도 되고 증거기록이 어느 정도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록은 더 많을 테니까요.

전합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4월 24일 날 전합체 심리 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부된 지 이를 만에 사실상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과연 전합체 참여하는 대법관 열두 분이 그 사건기록을 읽었을까요? 이를 만에 6~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허위 사실 공표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을까요.

메쿠라방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우리가 눈 감고 판단한다는 의미의 맹판을 일본말로 표현하던 과거의 그 표현을 들으신 적 있으셨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 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리는 법률가들을 과거에 비판할 때 메쿠라방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 저는 대법원장님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 오게 하고 대법관님들한테 서명날인을 시킨 사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근거가 이를 만에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고 다수의견을 보니까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다가 붙인, 복붙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작성된 것을 보면 저는 이게 그런 대표적인 메쿠라방 사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21세기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법원장님이나 보수 대법관 몇 분이 민주진영의 대선후보를 상대로 영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이를 만에 날림공사를 해 버렸던 이런 잘못된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전두환의 요구로 최규하 대통령이 억지 서명을 할 때, 정승화 육참총장 잡아들이는 저 재가문서에 서명할 때 오른쪽에 시간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사전 본인이 동의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군부가 저것을, 오른쪽에 있는 시간을 지웠는데 원본에 의하면 새벽 5시 10분에 그다음 날 서명한 걸로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 두 분, 이홍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두 분이 49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 놨던데 요약한 부분 한번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십시오.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도 거치지 않은 결론’, ‘이것은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 있어서도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줘 보십시오.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했다고 저런 표현을 써 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법관이.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저것 보십시오.

그동안 대법원이 절제해 왔던 그 관행을 어기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추구했다라는 취지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 의견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존중되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택 위원** 저는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규정 짓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요. 검사나 판사가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을 뽑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원리,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침탈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판결을 보고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겠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이 갖는 주인의 권리를 소수의 법조 귀족들이 뺏어 가려고 한다라는 이런 국민 주권에 대한 침탈,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침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오히려 민주진영 후보에게 표를 찍고 그런 내란 세력들, 사법 쿠데타 세력들을 심판하려는 열정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어제 대법원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혹역사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따로 없습니다.

○**박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조직법 제8조를 보면 상급법원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판결 확정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기환송돼 가지고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재상고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유죄 확정이 되겠지요.

이 법원조직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게 됩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죄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다만 시간이 문제겠지요.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나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보면 아예 대법관들도 탄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재명 후보의 주특기, 재판 시간 끌기 하겠지요. 현재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육십네 차례의 재판 지연 술책을 썼습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스물여섯 차례, 재판 불출석 스물일곱 차례, 기일변경 신청 아홉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차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요. 법원 송달 미수령 일곱 차례, 재판 불출석 여섯 차례, 기일변경 신청 다섯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차례.

온갖 수단을 써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재판 지연했던 거예요. 저도 변호사를 해 보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의 달인,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건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일곱 차례 되면요, 주거부정으로 구속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다른 사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니까 이렇게 재판 지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법을 바꾸는 거지요.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가지고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대통령직 다 한 다음에 처벌받아라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 가지 방법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재판 안 받는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법원에서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격분을 하셨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기분이 좋았나?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들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비유를 하자면, 국회에서는 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겠지요.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잘 서빙을 하고 카운터 보는, 식당으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손님은 국민들이시겠지요.

국민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주방장이 만든 음식을 손님이 맛을 보더니 ‘이것 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주방장이 ‘안 상했어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상한 음식이냐, 썩은 음식이냐 판단해 주는 것이 저는 사법부라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하는데 그러면 손님이 ‘바꿔 주세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신분 보장된 법관에 위해서 독립적인 판결을 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그렇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곽규택 위원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 그것이 삼권분립을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 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했나 하면 ‘탄핵 기각이 되면 유혈 사태까지도 생각해야’ 이렇게 겁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열두 분 중에서 열 분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음 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장님, 지금 법관으로서 수십 년 근무하셨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또 법관으로 근무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자마자 다음 날 현안질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민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것이 발생한 것이 2019년 4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지금 6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곽규택 위원 송달 미수령한 적은 없어요!

○박은정 위원 윤석열만 할까요.

○유상범 위원 재판부 기피 신청한 적 없고요.

○곽규택 위원 이재명 후보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송달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 차장,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안 하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박범계 위원도 지금 6년째 재판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 왜 거기는 얘기 안 해!

○박준태 위원 그 빠루를 민주당이 갖고 온 거예요. 민주당이 빠루로 회의장 문을 뜯은 게 그 사건의 본질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위원님들,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자료제출 요구해서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조배숙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질의 시간에!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유상범 위원 그러지 말아요. 같이 기소된 박범계 간사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봐요!

○박범계 위원 그건 사실이야. 그건 유상범 간사 말이 맞아.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 위원들은 재판 지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박준태 위원 그 빠루가 민주당 겁니다, 여러분!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멀리 갈 게 뭐 있어.

○박범계 위원 그건 유상범 간사 말이 맞아요. 위원장이 오버하신 거야.

○유상범 위원 맞잖아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대법원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 1심이 2년 2개월 걸렸대요. 왜 2년 2개월 걸렸어요?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낸,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 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 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 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 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랑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지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화면 틀어 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화면 틀어 주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고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회부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9일 걸렸지요?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희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것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윤석열에게'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라고 이를 뒤에 선고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환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 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 대법원장·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 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만 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환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 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했어요, 대법관들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것 사실심 하려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2만 5000페이지는 그러면 읽었답니까? 공판 기록 2만 5000페이지는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 대려면 2만 5000페이지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법관들에게,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희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숙연,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예?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법무부, 김용현·노상원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왜 내란수괴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지요? 왜 김용현·노상원 재판은 비공개로 하지요? 이게 법원이 내란수괴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하면서 법원,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짜고 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은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노상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리고 왜 재판을 비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비공개해야 될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9일도 아니에요. 단 7일 만에 이것을 과기환송 시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시간 지났어요. 서영교 위원님, 시간 지났어요.

○서영교 위원 답변하세요.

윤석열 재판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하통로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지하통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사 보안의 안전과 제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사실관계는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6만 페이지 수사기록·공판기록은 300페이지를 기준으로 소설 200권 분량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상범 위원 그리고 그 기록을 보지를 않았으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시겠어요?

본인 소설 하루에 몇 권씩 읽어요? 몇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소설?

○유상범 위원 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하루에 소설 20권 읽을 수 있어요? 300페이지 책 20권 읽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능력 있으면 300페이지 책 20권을 하루에 다 읽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참으로 희귀한 일이고 그래서 희대의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사실관계는, 틀린 것은 그게 아니지. 아니, 네이버 검색만 해도 두 분이 친……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그리고……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도 검사 해 보셨잖아요. 적어도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걸 뒤집으려면 하나하나 다 읽어 봐야 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유상범 위원 이미 다 알고 있지.

○송석준 위원 대법관 이 사건이……

○위원장 정청래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 송석준 위원** 우리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 조배숙 위원** 재판 40년 하면 다 노하우가 있어요.
- 박지원 위원** 여기까지만 합시다.
- 곽규택 위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뭘 다 읽어 봐요?
- 송석준 위원**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대법관은 벌써 다 알고 있지.
- 김용민 위원** 그러면 왜 대법관이 재판해? 온 국민이 다 알면 온 국민이 재판하면 되지. 국민이 재판하면 되지.
- 위원장 정청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온 국민적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
- 김용민 위원** 기록 안 보고 재판해도 되면 국민이 재판하면 되지.
- 박은정 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 배형원 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안 봐도 안다?
- 송석준 위원** 이미 안 봐도 다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다 봤지.
- 위원장 정청래**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 박은정 위원님 다시 질문하세요.
- 잠깐만요. 시간 다시 넣으시…… 됐지요?
- 박은정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 박은정 위원** 차장님, 사법부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사법부 독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은정 위원** 그 외부의 압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겠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당연합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런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은정 위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박은정 위원**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은 지금 대통령후보로 나온 후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 박은정 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단연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상고에 걸리는, 아주 즉일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27일이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지금 필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최종 확정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박은정 위원 예, 확정까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또 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촉박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판사 정원이 몇 분이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3200명이 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 어제 판결로 판사 3200여 분의 명예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판사들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의 판결로 사법에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희대 대법원장께서 판결문을 낭독하시면서 대통령후보 발언의 허위 사실의 판단은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의, 지금 3200여 분의 판사의 정치판사라는 비판, 명예가 무너졌거든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요. 최고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러한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좀 옮겨 주십시오.

차장님, 21일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9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법관들 열두 분이 이 기록을……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이 전체의 대법관, 그러니까 소부에 심리하는 대법관 외에 나머지 대법관은 몇 분이십니까? 소부 외에 전원합의체에 합류하게 된 대법관은 몇 분이실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소부에 네 분이시니까……

○박은정 위원 여덟 분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장님 제외하면 일곱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일곱 분이시지요.

그러면 이 일곱 분은 21일부터 기록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21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1일부터 22일 날 합의 기일이 있었고요. 22일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대법관님들의 합의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박은정 위원** 언론 보도에는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판결문에 보충 의견에서 설시를 한 대법관님들의 의견 내용을 보게 되면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자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었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이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글쎄요.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전합으로 올라간 시간이 21일이고 22일은 합의, 노태액 대법관의 회피를 위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이 사건을 검토한 시간은 21일 이후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 날 두 번째 합의에서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수 의견이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선고가 났고 그렇다면 이 기록을, 이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21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기록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날림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국회의원들의 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19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은 불과 36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6·3·3의 원칙은 사실은 당선자를 위한,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당선되어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 그 지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해서 그 지위를 확정시켜 주려는 것이지 낙선자에 대해서 6·3·3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6·3·3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다른 후보자들, 총선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출속으로 36일 만에 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만, 낙선자에 대해서만 6·3·3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은 윤석열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3200명을 이끌고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전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타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 전 현재 판결문을 다 보았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만장 일치가 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한 자 한 자 다듬어 쓴 그 명판결문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주장과 논리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귀연 판사로 인해서 정말 성실하게 법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는 많은 선량한 법관들이 도매금으로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사실에 종지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

각이 듭니다.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도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인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 국민들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이마다가 법원이 지귀연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조롱도 많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한 후 긴급현안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고 있어요. 정족수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은 민주당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조배숙 위원 지금 결정하시지요. 이것도 편파적인 진행 하시네.

○유상범 위원 정족수 됐는데, 왜? 한 명 모자라네. 합시다, 정족수 됐는데.

○위원장 정청래 기다리세요.

○유상범 위원 정족수 됐으면 하는 거지, 뭘 기다려.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위원님들 안 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원래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속개 시간 되면 정시에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13시42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퇴임일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여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그 심사에 있어서는 재직 중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소추특권이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인지, 헌법 제84조가 문언상 소추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소제기 단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의 적용 시점에 있어서는 헌법상 재직 중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당선된 날부터가 아니라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로 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조문으로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전문위원께서 짧은 시간인데도 검토보고서를 아주 종합적으로 제대로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김 처장님, 우리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정한 범죄로 인해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 것으로,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범죄 중에서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기본 해석 원칙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헌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헌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을 보면 ‘재직 중의 범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의 모든 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소추특권으로써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해서 대통령의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와 같은 법의 내용이라고 보여요.

작년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유상범 위원** 거기에서 면책이 되는 내용을 뭐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재임 중에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면책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지요, 그 판결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유상범 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직무수행을 공식 행위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추정적 면책이 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공식 행위에는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면책의 범위를 그렇게 규정했는데 지금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임 중의 행위가 아닌 기준에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사실상 처분적 법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개정법률안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 아마 의견 조회가 갈 겁니다. 의견 조회 갈 테니까 제대로 판단하시고,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법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잘 준비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의견 조회 오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법치를 끊 건 비상계엄 아니에요, 내란?

그다음 대체토론하실 분?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사무처장님, 김기표입니다.

소추의 의미가 뭔가요? 소추의 의미가 뭐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는 소추의.....

○**김기표 위원** 그것 읽어 보시지요. 아시지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반대 의견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예.

한번 읽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소추는 심판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김기표 위원** 그러면 거기의 그 반대 의견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반대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각하 판결됐지요,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결론, 전체에 대한 각하.....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른바 수사권 범위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는데 이게 소의 이익이 없다던가요, 아무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김기표 위원** 각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각하하지 않고 실체판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반대 의견에서.....

○**김기표 위원** 반대 의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다수의견 이게 소추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각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소추의 개념에 의해서 적시한 것이

지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 결정문 설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 소추의 개념에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와 공소 유지, 항소 제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은 맞지요? 그것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이 결정문 설시에 따르면 그렇게 읽힙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설시에 따르면 맞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김기표 위원** 이 법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걸 떼를 쓰니까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 84조에 소추에 면죄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헌법재판관께서 반대 의견에 썼던 것처럼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제기하는 그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면서 헌법 규정에 소추라고 적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변호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소추에 어떤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날벼락이 나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하지 않나 헌법재판관 권한쟁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지 않나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지 않나,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또 소추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저희한테 아까 의견 조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차장님, 헌법에 이렇게 소추라고 돼 있는 것은 헌법을 만든 분들이 오늘 같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사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형만 정하는 일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로 본다면 양형도 누구나 거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이 법을 만들면서 민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법은 이 법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 헌법상 소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수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사건 맡길 때 소추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는 다 가능하다, 수사 가능하고 다…… 아니, 국정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는

데 강제수사든 수사든 다 가능하고 다 해 놓고 소추만 안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공수처로 직권남용죄 가져가서 관련된 내란죄 수사하라고 여기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 가지고는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소추는 이것저것 다 앞뒤로, 국정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재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헌법에 분명히 소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선출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범죄로 재판받고 있고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앞에 소추니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이야기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소추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추만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법률로써 그 소추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인에게 그리고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돼 있는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아직 해당 법률안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검토 후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차장님도 못 봤고 사무처장님도 못 본 법안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뭔 법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에 만들어 가지고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위원장 정청래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위원 토론하시지요.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장님 오셨습니까?

자리를 바꿔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토론하세요.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그러니까 상대 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지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법이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대통령이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제1호에 따라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학설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학설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학설이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학설에 따르면 사실은 이 사건도 나중에 만약에 특정 어떤 후보에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공소 기각 결정해야 돼요, 법원이.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소 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학설상 너무나 당연하게 이 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명문 규정에 명확하게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 얘기 했지요. 이 법이 미국에서는 최근에 연방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헌법에 불소추특권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소 취소했어요, 검찰이. '우리의 대통령을 사법부에게 내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하더라고요.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에 따라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헌법에 맞게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회가 온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형사소송법 246조 혹시 아십니까?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뭘 수행합니까? 재판 수행한다는 거지요? 이미 형사소송법에 국가소추주의의 소추가 공소 제기와 재판 진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지원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긴급현안질의

(14시02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대법원의 판결 나고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뉴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뉴스 봤는지 저는 묻지 않았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는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판결에 대한 비판, 최고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것은 이렇게 들리네요, ‘쿠데타를 해도 통치행위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것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나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대법원이 어찌어찌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처장님, 지금까지 법관 해 오시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안마다……

○**김기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안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접수된 지 34일 만에 재판이 결정됐고.

저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사법부가 이 사회에서 거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더욱더 법원 판사들, 특히나 대법관님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편드는 게 더 솔직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 잇속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판단의 권한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저거 뭐지? 대법원장 밑에 저 출개들처럼 거느리고 앉아 가지고 대법원장은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장면을. ‘대법관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옴을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돼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대법관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서 처음에 소부로 배정되고 며칠 만에 국가적으로 양쪽이 절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대법원 판결문에 반대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폐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입니다, 그게.

읽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 읽어 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기표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관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합에 들어오는 열세 분 대법관 중의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건의 결론은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기표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실지 알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대법원장……

○김기표 위원 중지하세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서.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이게 마치 귀족들 12명이 앉아서 일반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이 귀족들은 우리가 규정할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든 어떤 정치행위를 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 쓴 것처럼,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저는 제가 정치행위를 하지만 정치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정보가 오픈돼 있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못 보던 것들을 국민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대법관들에 가진 실망감, 사법부에 대해서 가진 실망감,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이런 느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헌법을 개정할 국면이 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두 가지 쟁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그 심리의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다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자제하고 이런 것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승복의 원천이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과기환송한 10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얹매이고 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제청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법관들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임명합니까? 저는 저런 사법부라면 제삼자 특검 추천 이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답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법관으로 임명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천대엽 대법관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처장 자리로, 직위로 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법관이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적당히 해요, 가증스럽다니.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한테 가증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위원장 정청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장경태 위원 부끄러울 겁니다, 아마 대법관도.

○위원장 정청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나온 것 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국회의원들 과거에 불행한 일, 창피한 역사 없어요?

○곽규택 위원 당연히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뭘 조용히 해요?

○유상범 위원 조용히 할 게 어디 있어, 여기에? 적당히 하시라고.

○위원장 정청래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 준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위원장 정청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그것 최종심, 대법관이 했지요? 맞아요, 틀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금 천대엽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구제가……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위원 질의에 천대엽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심에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현재 진행 중인……

○위원장 정청래 천대엽 대법관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 봤어요. 검사가 써 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이 대법관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하다면, 떳떳해지고 싶다면 그 이전에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곽규택 위원 불리하면 맨날 사과하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에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기준의 대법원에서도……

○위원장 정청래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곽규택 위원 아니, 이재명 후보 같은 잡범 사건을 어디다가 비교를 해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 흑역사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본인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골방에 앉아서 공부한 것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곽규택 위원 미 문화원에 방화나 했잖아요!

○송석준 위원 간사님, 경고 좀 주시고요.

발언총량제 왜 적용 안 합니까? 지금 시간 정해 놓고 발언하셔야지요.

○이성윤 위원 좀 들으세요. 좀 들으시라고요.

○곽규택 위원 미 문화원에 불 지른 사람이 판사한테 공부했다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 누가 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곽규택 위원 몰라요!

○위원장 정청래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곽규택 위원 몰라요!

○위원장 정청래 왜 모르면서 지껄이고 있어요?

○곽규택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뭘 지껄여?

○송석준 위원 언어를 순화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저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곽규택 위원 미 대사관에 불 질렀네.

○위원장 정청래 똑똑하게……

- 불 질렀다고요? 밖에다 떠들어 봐요, 즉각 사법조치할 테니까.
- 곽규택 위원** 뭐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 했어요?
- 위원장 정청래** 사람이 정말……
- 곽규택 위원** 그런 사람이 판사한테 공부했다고 뭐라 할 수 있어요?
- 이성윤 위원** 그만 좀 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후에 기사에 대해 검색 한번 해 보게.
- 곽규택 위원** 전과가 자랑이야?
- 박준태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 이성윤 위원** 그만하세요 좀!
- 송석준 위원** 질서를 유지합시다.
- 곽규택 위원** 죄 지은 게 자랑이에요? 어디 이재명 같은 잡범을 갖다가 옹호하고 있어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양심이 있으면 미안하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 이성윤 위원** 2차 경고합니다, 2차 경고.
-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합니다.
- 서영교 위원** 전두환 독재하고 싸운 게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어, 그동안?
- 박준태 위원**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장경태 위원** 그때 뭐 하셨어요? 공부해서 잘했어요?
- 곽규택 위원** 미 대사관에 불 지른 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뭐가 상관있어요?
- 이성윤 위원** 뭘 불을 질러!
- 서영교 위원** 나가서 이야기하라잖아, 나가서!
- 위원장 정청래** 잠깐.
- 장경태 위원** 불 질렀다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 장경태 위원** 쫄아 가지고 말도 못 하면서!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미 대사관에 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 서영교 위원** 뭘 근거를 갖고 와요? 법적 조치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근거를 갖고 오세요.
- 장경태 위원** 기자회견 가서 하세요.
- 유상범 위원** 사제폭탄 던지다 미수에 그쳤다……
- 위원장 정청래** 미 대사관에 불난 적 없고 불 지른 적도 없고. 알았어요?
- 박준태 위원** 폭탄 던지려다 미수에 그친 건 맞잖아요.
- 유상범 위원** 폭탄 던지다 미수에 그친 거지.
- 위원장 정청래** 허위사실 지금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한테 그랬다는 말 한 적 없어요. 과거에 그런 적 있잖아요, 누군

가가?

○이성윤 위원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해.

○장경태 위원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누가 했어요?

○곽규택 위원 몰라요!

○위원장 정청래 미 대사관에 불 지른 사람 누가 있느냐고?

○곽규택 위원 몰라요.

○위원장 정청래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대사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위원장 정청래 떠들지 말고 입 다무세요.

○곽규택 위원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위원장 정청래 미 대사관에 누가 불 질러요?

○곽규택 위원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대사관이라고.

○위원장 정청래 대사관저라고.

○곽규택 위원 또 말 바꾸네.

○위원장 정청래 불 지른 적 없다고.

○곽규택 위원 또 말 바꿔.

○위원장 정청래 알았어요?

○서영교 위원 전두환을 옹호한……

○이성윤 위원 똑바로 알고 해야지, 똑바로 알고!

○곽규택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서영교 위원 전두환 독재랑 싸운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많아.

○유상범 위원 그때는 88년이에요. 전두환 끝나고야.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위원 전두환 독재 때 아무것도 못 하던 것들이.

○위원장 정청래 계속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제49조 권한에 의해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서영교 위원 잘했어요.

○이성윤 위원 잘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했어!

○곽규택 위원 발언권 없다고 말 못 할 줄 알아요? 발언 기회 필요 없어!

○장경태 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퇴장시켜 주세요, 퇴장시켜.

○곽규택 위원 이제 모든 위원들 말할 때 내가 다 끼어들 거야. 발언권 필요 없어.

○장경태 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뭐 이런 악법을 만들면서……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중지에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하기 때문에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하세요.

- 곽규택 위원 싫어요.
- 위원장 정청래 경위는 와서 퇴장시키세요.
- 곽규택 위원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 조배숙 위원 뭘 퇴장을 시켜요?
- 박준태 위원 뭘 퇴장을 해요?
- 유상범 위원 뭘 퇴장을 시켜?
- 위원장 정청래 다음, 박준태 위원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순서 바뀌었는데.
- 곽규택 위원 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퇴장이야, 퇴장은.
-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 서영교 위원 전두환 독재에 아부하고 아무것도 못 하던 사람들이 뭘 말이 많아.
- 조배숙 위원 무슨 아부를 해요?
-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그냥.
- 곽규택 위원 독재시대에 뭐 했어요, 서영교 위원은?
- 장경태 위원 윤석열한테 머리나 조아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수괴한테 가 가지고.
- 곽규택 위원 독재시대에 뭐 했어요?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퇴장하세요.
- 박준태 위원 뭘 퇴장을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퇴장을 명했어요.
- 장경태 위원 머리나 조아리고 있는 주제에 어디서 입만 살아 가지고.
- 위원장 정청래 퇴장을 명했어요.
- 박준태 위원 기가 막혀 가지고.
- 서영교 위원 독재시대에 꼼짝도 못 하고 윤석열 밑에서 아부나 하고.
- 박준태 위원 아니, 위원장이라 언제라도 퇴장이 되는 겁니까?
- 장경태 위원 무서워서 꼼짝도 못 한 사람들이.
- 위원장 정청래 퇴장을 명했어요.
- 박준태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 곽규택 위원 못 나갑니다.
- 위원장 정청래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 곽규택 위원 못 나갑니다.
- 위원장 정청래 퇴장하세요.
- 곽규택 위원 못 나가요.
- 위원장 정청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위원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키고 국회의원 쫓아내고……
-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그런데 꼭 제 질의 앞에 이런 소동이 벌어져요. 위원장님, 제발 질서유

지 좀 잘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그 당에서 조심하세요, 그 당에서.

○박준태 위원 뭘 그 당에서 조심합니까?

○서영교 위원 그 당에서 조심해요.

○박준태 위원 광규택 위원 퇴장시키려면 국민의힘 위원들 전부 다 쫓아내세요.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해요, 적당히.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 두 번 경고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 안 하면 다음 분 시키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할게요. 하겠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어제 제가 좀 일찍 퇴근하셔서 동네 가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민심 좀 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동네 민심 좀 들어 보셨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우리 세간의 민심이 어떤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어제는 제가 다른 긴요한 공무가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못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한 번 더 서민들의 목소리 잘 귀기울여 보시고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만 해도 정말 사법부 신뢰성에 저도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이재명 후보 2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사진을 확대한 것을 가지고 사진을 조작을 했다 또 국토부 협박을 했다라는 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 2심 판결에 대해서 세간에 온갖 풍자가 난무할 정도로 정말 이게 대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2심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 어제 대법원 판례 아니었습니까?

처장님, 어떠세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법조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입니까? 사법 쿠데타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다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절차에 관한 쟁점 모두가 충실하게 90쪽에 가까운 판결에 다 담겨 있고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응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실력 있는 분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이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온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대법원, 그동안 우리 야당 위원 같이 여당 위원 도와서 조직도 늘려 주고 또 여러 가지, 지난 연말에 예산도 많이 보장해 줬지 않습니까. 야당하고 대법원이 척지고 이런 건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국회의 어떤 입법 사항과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대한민국의 국가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벨경제학 수상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제도를 갖고 있다, 시스템을 갖고 있

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또 이런 탄핵 사태가 생기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우리 헌법 시스템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거대 야당에 의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가능한 잘못된 문제가 있는 헌법 시스템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인 조치로 인해서 국가적인 중대사가 생겼고 다행히 잘 복원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제, 1987년 체제를 교체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시대정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출출이 탄핵, 탄핵의 이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자비한 탄핵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복 탄핵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 방탄 탄핵, 나중에는 출탄핵, 곧 아마 이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총탄핵 한다고 그래요. 소위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겠다고 그래요. 이미 헌법기관의 중요 기관인 감사원장도 탄핵 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어제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무자비한 탄핵, 그러더니 어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 총리대행 3개를 겸임하다가 결국은 총리가 돌아오시면서 다시 부총리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부총리를 상대로 또 탄핵한다고 스토킹 탄핵을 했었어요. 이제는 자제하겠지 했더니 급기야 어제 갑자기 대통령 대신 총리 대신 국가의 모든 것을 군사,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서부터 외교 그리고 통상, 지금 중요한 모든 민생 쟁기고 이런 걸 해야 될 최상목 대행을 어제 무자비하게 탄핵을 가결시켰다는 말이에요. 직무정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차피 직무에 대해서 일을 못 하거나 이제는 어떻게 되거나 어제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대행에 대행에 대행에, 이게 뭐니까? 교육부총리가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과 총리를 같이 겸하면서 대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현 체제, 그것이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에서 나타나는 만행적 행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출탄핵, 총탄핵, 심지어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는 스토킹 탄핵을 하는 이 탄핵 제도가 정상적인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는 저희들한테 맡겨진 사건에 대해서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저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요. 지금 출탄핵, 총탄핵, 국무회의까지 무너뜨린 탄핵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금 사건화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심리 중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제 어렵게 민생 안정을 하고 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자고 추경 합의해서 처리된 날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고 그걸 집행할, 책임질 경제부총리를 무자비하게 스토킹 끝에 결국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지금 몰아

가고 있어요. 이게 국회가 할 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천대엽 처장님,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이게 사법 쿠데타 맞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송석준 위원 쿠데타예요,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없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한결같이, 심지어 법사위원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어제 대법원의.....

○위원장 정청래 발언시간 끝났어요.

○송석준 위원 현명한 판단을 무슨 사법 쿠데타니.....

○위원장 정청래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거기마다 끝도 없는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국민들에게 성명서 형태로 발표할 의향은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 그만하세요.

○송석준 위원 하시도록 좀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끝났어요.

○송석준 위원 한말씀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광규택 위원 퇴장하세요.

○송석준 위원 저한테 별도로 발언해 주세요.

.....

○유상범 위원 퇴장 못 해요.

○조배숙 위원 퇴장 못 합니다.

○유상범 위원 징계 청구하세요. 뭔 퇴장이야. 강제 퇴장이라니 무슨 퇴장이야?

○위원장 정청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제가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했습니다. 발언권을 중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언권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끼어들어서 계속 떠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퇴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 조치를 한 겁니다. 퇴장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경위가 와서 퇴장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국회법 제14장 징계 155조(징계) 사항에 보면

8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5조 1항에 해당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징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징계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퇴장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징계절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경위께서는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뭘 퇴장을 시킵니까?

○유상범 위원 강제 퇴장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켜 주세요.

○박준태 위원 어떤 상임위에서 위원을 위원장이 쫓아냅니까?

○유상범 위원 어떤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너무 과도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이랑 언쟁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의 발언도……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저에 대한 공격도……

○유상범 위원 그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발언하면서……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저에 대한 공격도……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가짜입니다, 가짜, 허위. 조선일보에서 한 번 저에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 대사관에 방화했다고 해서 정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은 89년도 노태우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허락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농축산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 제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 그렇다고 대사관저에 사제폭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좀 하세요.

거기에 불이 나지도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화 예비라고 검찰이 엮어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도 엮은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저희가 불 지르지도 않았어요. 불 나지도 않았어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예비지.

○서영교 위원 검찰이 엮은 게 맞네.

○유상범 위원 부끄러워 하세요, 그 정도만 말하면.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곽규택 위원은 미 대사관에 제가 방화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또 이렇게 유포했어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저에게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제가 고소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하고, 아파트 경비원 어떤 분은 죄송하다고 편지 일곱 장을 저한테 써서 사과 반성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규택 위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걸 믿고 이렇게 유포하는 자들도 제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신상발언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위원장 정청래** 신상발언 드리지 않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퇴장 안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행정처장님, 우리 헌법 1조 2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용민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찾아 보시지 말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러시지요.

○**김용민 위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국민주권을 천명한 것인데 이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구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국민주권 실현의 국민주권을 구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으로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사법부의 권력도 결국에 국민으로부터 나오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사법부의 독립은 누가 지켜 주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민의 신뢰와 또 존경으로 뒷받침된다고……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그 전에 국민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알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독재 시대 때 국민이 피를 흘려서 사법부를 지켜 줬어요. 사법부 스스로 잘나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고 국민이 지켜 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국민들이 어제 전합 판결을 보고 나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화가 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판결을 잘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국민이 진짜 화 난 지점은요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 뽑으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함부로 나서서, 고작 12명의 법관들이 함부로 나서서 내 선택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냐, 이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이? 그렇게 국민이 피 흘려 지켜 준 법원이 지금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쳤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판결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에요.

87년 헌법 개정 국민들이 무엇을 외쳐서 헌법 개정했습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직접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어제 전합체 판결은 국민의 직접 선택권을 박탈시켜서 이번 대선을 간접선거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재판권 가지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제다가 국민을 이번 대선에서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 버린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에요. 사고를 친 겁니다. 대형사고를 쳤어요, 지금.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어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형사고 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얘기를, 국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어제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김용민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와 같은……

○김용민 위원 그러면, 어제 위법하고 부적절한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대법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공직을 박탈하네 마네 이런 정도의 판결을 하고 있는데 어제 판결로 선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

는 대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직접 선출을 통한 국회와 또 대통령의 선출 그들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꾸준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법치주의가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분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은 법원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구체적인 것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김용민 위원**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복사기 관리, 종이 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것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재판 사항 아니에요. 지금 뒤에 따라오신 분 누가 답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기서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기록을 복사해 줬는지가 답변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들이 필요……

○**김용민 위원** 재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기록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절차이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봤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보셨겠지만……

○**김용민 위원**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2일 날 저 날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22일 날, 예.

○**김용민 위원** 하루 만에 기록 7만 건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 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에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 주고 다 봤다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전합 다수의견, 다수 보충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기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자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내용을 숙지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김용민 위원 기록을 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원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봐야지요. 재판연구관이 기록 본 것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동의 못 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게 왜 재판 사항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심증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의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록을 안 봐도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한 겁니다, 대법관이.

○유상범 위원 그만 좀 하세요. 말 취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김용민 위원 그 취지잖아요, 지금.

○유상범 위원 아이고 참, 무슨 말을 하면……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판단했을 때 대법관의 증원, 예를 들면 30명, 40명, 50명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도 입법 사항입니다. 어제 판결로 사법부도 썩었구나,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마 국민적인 요구로 분출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무죄 나왔으면 훌륭한 대법원이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뭔 말이 결과

에 따라서 그렇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다 경청했고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정정 사항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정정은 아니고 보충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발언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16.2일이 걸린다고요, 한숨도 안 자고.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자료를 그냥 한 자 한 자 소설책처럼 읽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건. 기록을 못 보나? 변호사 안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김용민 위원** 1분에 3페이지를 봤을 때 16.2일이 걸린다고요.

○**위원장 정청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대법원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김용민 위원** 허술했잖아요, 지금 기록을 안 봤는데. 기록을 안 봤잖아요.

○**송석준 위원** 뭘 허술해요, 허술하긴.

○**김용민 위원** 재판 한번 받아 보십시오. 참 잘했다고 하겠네.

○**위원장 정청래** 됐습니다. 질의 끝났고요.

○**유상범 위원** 무죄 취지 선고 됐으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박지원 위원** 무죄니까 당연히 잘했지.

○**유상범 위원** 그땐 잘했지요? 아이고, 참. 적당히 해요, 적당히.

○**위원장 정청래** 여러분, 위원장이 자제해 달라면 좀 자제해 주시고 상임위의 발언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는 것이니까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정회까지 되고 했으니 이 사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낼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위원장 정청래** 자, 보세요.

곽규택 위원은 이미 제가 퇴장명령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걸어 나가면 뺄쯤할까 봐 제가 정회까지 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와 있어요, 지금. 퇴장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게 배려예요? 우리는 위원장님의 그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용민 위원** 사과라도 하든가요, 거짓말했던 것을.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오늘도 법사위가 서로 간에 목소리가 올라가고 고성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절제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정부위원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또는 누가 봐도 아주 불편한 발언들은 가능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이와 같이 극단적인 퇴장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 한 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반복이 되면 결국은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가고 서로 간에 격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광규택 위원을 설득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광규택 위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광규택 위원께서 위원장의 입장도 존중해서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행정실장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광규택 위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광규택 위원이 위원장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잘 들었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제했으면 돼요. 그래서 경고를 듣고도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중지했어요. 그런데 발언권이 중지됐어도 본인은 계속 떠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장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언권이 중지돼 있고 퇴장한 여기에 있는 광규택 위원은 없는 거예요. 유령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아까 145조 1항·2항 조치한 것을 다시 번복해야 됩니다. 이미 발언권이 중지돼 있고 퇴장명령을 한 상태예요. 본인이 불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유상범 위원** 의사 진행의 재량권으로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신상발언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말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할 말이 많지요.

○**위원장 정청래** 제가 번복해야 된다고요, 145조 1·2항에 의해서 한 것을.

○**송석준 위원** 번복할 건 해야지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 재정신청도 있잖아요.

○**유상범 위원** 의사 진행 과정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위원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고 또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재량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장을 맡으면서 두 가지만은 지키고 싶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지켜졌습니다, 법사위 회의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다, 항상 정시에 법사위는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1분 전, 2분 전이면 후다닥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 개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주 훌륭해요, 그 점은.

○위원장 정청래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 상호 간 질의 시간에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끼어들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참았다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어필을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편한 발언을 합니다. 참아 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위원들이 얘기들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의장에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운영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하건대 아무리 그래도 좀 참고 나중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신청해 달라 그렇게 합니다. 저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국회법상 위원에게 발언권을 줬으면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은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소란할 때가 아니고는 불편해도 중간에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잠깐 중지하고 시간을 멈추라고 하고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국회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지금 송석준 위원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발언권을 중지했다가 ‘에이, 발언권을 중지했으면 저 위원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다시 제가 번복하고 발언권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시키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퇴장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이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1차 경고에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조용히 하면 될 일이에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 2항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발언권부터 중지했지요. 다시 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발언권이 중지됐어도 계속 떠들겠다 그러면 위원장이 할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퇴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농담처럼 장경태 위원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장경태 위원이 1호 퇴장이 될 것 같다. 조심해라’. 왜? 제가 퇴장시키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위원을 먼저 퇴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균형 있게 나름대로 위원장은 심모원려하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과규택 위원은 이것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퇴장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혼자서 그런 중징계를 강하게 하시지 말고 간사들한테도 협의를 시키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혼자 다 하시지 말고.

○위원장 정청래 계속 퇴장조치에 불응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한 달간 본회의 출석 정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스스로 퇴장해 주시고, 더 이상의 높은 징계를 할 의향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정청래 지금 박준태 위원 질의 시간이에요.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1분만 주면 안 돼요?

○ 위원장 정청래 안 됩니다.

○ 박준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의 사법 불복, 법원 겁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김병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 권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 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이렇게 오만한 표현을 합니다. 민형배 의원, ‘대통령은 주권자 시민이 뽑습니다. 대법관이 뽑는 게 아닙니다.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벼락 맞을 짓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준태 위원 다음 장도 한번 보시지요.

최민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습니다’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세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장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대법관들 대표해서 단호하게 일갈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건에 정치적 사건 또 경제적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법적인 사안이 돼 버립니다.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법의 구조, 시스템을 모든 국민들이 존중해 줘야만 법치주의 그리고 모든 헌법기관이 존립·유지할 수 있다는 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태 위원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김승원 의원님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북한식 정치재판의 결과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아무리 사법카르텔로 이재명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주장과 표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겁니다.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법관에 대한 겁박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법원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이분들께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제가 돌려 드릴게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얇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이것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이제 후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은요 범죄 도피처, 범죄 피난처가 아닙니다. 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관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급하게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법안 내용이 뭔지 파악도 하지 못하는 법을 오늘 일방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재의 요구할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대로 법률을 공포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되면 받던 재판을 중지한다는 그런 법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 해석상으로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해 가지고 하던 재판은 대통령 되더라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정권 잡기 전에도 이런 식인데 지금 정권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사면법 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들만 사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누군가 약속을 해 보십시오.

다수 의석으로 법 아무렇게나 통과시키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대로 공포하면 되니까, 대통령직이 무슨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도 아니고 그 직을 쥐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국정 운영, 의회 운영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고 반성할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태도로 국민께 말하고 여기 계신 그 경험 풍부하신 선배 위원들께서 그걸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제가 위원장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가중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 전체를 모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괴규택 위원이랑 위원장 간에 언쟁이 있었고 그 언쟁을 했다는 이유로 괴규택 위원한테 발언권 정지하고 퇴장을 명령하고 퇴장을 안 하니까 경위를 통해서 끌어내라? 경위들이 지금 위원들 뒤에 와 가지고 서서 ‘위원님, 퇴장해 주시지요. 안 그러면 저희가 모시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 입틀막보다 더한 거예요. 몸틀막이에요, 몸틀막. 이게 바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가장한 의회 폭력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위원장께서 내린 조치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이 질의 말미에 위원장에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규택 위원님.

○**괴규택 위원** 저요?

○**위원장 정청래** 옆에 박준태 위원님.

○**괴규택 위원** 유령 취급하네.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가중스럽다’가 사전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학원강사 시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국어 교육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보세요. 가중스럽다는 뜻은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 뜻입니다. 이것

은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뭉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말도 못 합니까?

○조배숙 위원 절제하셔야지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청래 저는 오전에도 그랬어요. 어제 대법원 판결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더 많은 재판관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귀연 판사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법원행정처장도 미루어 짐작 가지 않습니까? 법원 앞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울분 토하면서 ‘우리 법원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저 판사 하나 때문에’ 이런 판사들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법관 전체를 욕보였다고 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지귀연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잖아요, 어제. 지귀연이 잘못된 거지요! 그야말로 패악 판결 아닙니까? 참, 지귀연이 아니라 2심이. 지귀연이 잘 됐고 2심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지귀연 판결을 잘못했다고 대법원에서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하시고.

곽규택 위원은 퇴장하세요.

○곽규택 위원 유령이라면서요.

○위원장 정청래 퇴장하세요.

○곽규택 위원 못 해요.

○위원장 정청래 경위, 퇴장시키세요.

○유상범 위원 좀 한 바퀴 돌고 뭘……

○송석준 위원 경위들,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박범계 위원 한 바퀴 좀 돋시다, 이제.

○서영교 위원 그냥 퇴장해요.

○송석준 위원 강제집행 이것은 현정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법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리·권한을 침해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국회 경위들은 위원장이나 의장이 퇴장을 명했을 때는 퇴장을 시킬 집행 의무가 있어요.

○곽규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영교 위원 이 진행을 막으면 국회 선진화법 위법 아닙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나경원 의원이 결여 있는 그 법 위반이에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장 회의 진행에 그렇게 거부를 하면 그게 법 위반이에요.

- 곽규택 위원** 마음대로 말하셔도 좋아요. 뭐 법을 알아야 대화를 하지.
- 유상범 위원** 적당히 하세요.
- 서영교 위원** 법 위반이에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
- 송석준 위원** 우리 법사위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타협으로 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 박준태 위원**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 송석준 위원** 우리 양 간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를 해서 헌정사에 가장 있을 수 없는 추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 박준태 위원** 이것 경위분들에 대한 갑질이에요, 갑질.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의원 몸에 손을 대서 끌어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정청래** 경위들이 하는 것이……
- 유상범 위원** 언제부터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가요?
- 위원장 정청래** 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위원이 끌어내세요.
- 곽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정청래 위원장의 전과기록이에요.
- 서영교 위원** 경위들의 업무를 방해하면 그것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곽규택 위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 박준태 위원** 위원님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동료 위원을 끌어내라고 합니까?
- 장경태 위원** 경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징계 대상입니다.
- 곽규택 위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 김기표 위원** 곽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없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 장경태 위원** 밖에 가서 하세요. 기자회견장에서 하세요, 기자회견장에서!
- 곽규택 위원** 선고된 때가 1990년이에요, 90년.
- 박지원 위원** 이봐요! 그게 무슨 짓이야!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전두환 시절도 아니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 장경태 위원** 졸아 가지고 못 하면서! 졸보가 말이야, 졸보같이 말이야.
-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 곽규택 위원** 독재 시대에 한 반독재 운동도 아니에요!
-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 송석준 위원** 자제하세요. 법 집행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 서영교 위원** 퇴장시키는 업무를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이 읽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허위사실이 아닌데 미대사관을 방화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지요. 곽규택 위원이 읽은 것은……
- 곽규택 위원** 대사관 점거, 방화예비라고 나오잖아요.
- 위원장 정청래** 사실이에요.
-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했다고 얘기하더만.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퇴장하시라고. 사실이니까 퇴장하시라고.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랑 조희대랑 친구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김용민 위원 그게 명예를 훼손한 거냐고요.

○장경태 위원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 명예훼손이지.

○박은정 위원 윤석열 친구라는 게 명예훼손인가 봐요.

○김용민 위원 왜 친구가 명예훼손이에요?

○유상범 위원 친구가 아닌데.

○박은정 위원 친구가 명예훼손인가 봐요.

○김용민 위원 친구면 명예가 훼손돼, 대통령과 친구면?

○유상범 위원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송석준 위원 간사님, 우리 오늘 정상적인 법사위 진행 어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친구는 명예훼손인가 봐요.

○장경태 위원 윤석열 친구는 저한테 하면 명예훼손이지요. 기분 나쁘니까, 저는.

○유상범 위원 이렇게 가서 뭐 할 거예요?

○송석준 위원 당장 양당 간사가 협의할 때까지 정회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동료 위원이 강제 퇴장당하는 걸 지켜봅니까?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곽규택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데 끼어든 적 한 번도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박은정 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아무 때나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하고 설전을 벌인 거예요.

○박은정 위원 많이 있으세요.

○곽규택 위원 질서유지 위반한 적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나는 당신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유상범 위원 당신?

○곽규택 위원 나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정청래 훈계를 했으면 했지.

○유상범 위원 위원장이 점점 이렇게 갈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예,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장경태 위원 공무 집행하세요, 경위분들.

○유상범 위원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송석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송석준 위원 저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요청.

○장경태 위원 공무 집행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의 의사를 방해하면……

○**곽규택 위원** 아무리 법사위지만 법원행정처장한테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주면서 모욕하는 그런 법사위원장을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경위들 뭐 하세요? 퇴장시키세요.

○**송석준 위원** 이것 절대 안 됩니다.

○**박준태 위원** 괜히 이분들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송석준 위원** 우리 헌정사의 추태를 우리 법사위에서 벌이지 맙시다.

○**유상범 위원** 왜 힘없는 경위를 괴롭히고 그래요?

○**장경태 위원** 경위가 1차 고지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고지해서 불응하면 30일 출석정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장경태 위원** 지금 1차 고지했어요.

○**서영교 위원** 아유, 그냥 본인이 나가면 되지 왜 경위들을 힘들게 해.

○**유상범 위원** 징계해요, 징계.

○**장경태 위원** 지금 1차 고지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옆에 간사가 정리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분명히 퇴장 명령에 거부하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강제로 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건 독재시대에나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말 가지고?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두 분 간사한테 맡기고……

○**위원장 정청래** 퇴장시키세요.

○**송석준 위원** 잠시 정회하고 좀 진정이 되면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받아내고,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을 설득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진정하라는데 송석준 위원이 진정을 못 하도록 계속 지금 돋우고 있어요. 앉으세요.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 좀 앉아라, 앉아!

○**송석준 위원** 저는 여태까지 돋운 적 없어요.

○**김용민 위원** 위원님이 좀 진정하세요.

○**송석준 위원** 저 아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내 발언 시간이라.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용민 위원** 진정 좀 하세요, 위원님.

○위원장 정청래 앉으세요.

○송석준 위원 서로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폭력을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장경태 위원 지금 애꿎은 경위분들만 많이 오셨네요.

○곽규택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정회하시고……

○위원장 정청래 제가 아까 정회하면서 퇴장할 기회를 드렸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정회를 한 겁니다.

○박준태 위원 대단한 배려를 해 주신 것처럼……

○송석준 위원 그것은 더 모욕적인 얘기지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좀 이건 중재를 해 주셔야지요.

○김용민 위원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박준태 위원 뭔 사과를 해. 답답해 죽겠네, 진짜.

○곽규택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조배숙 위원 아니, 신상발언을 안 받으셨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사과를 듣지도 않겠고 사과할 가치도 없어요.

○곽규택 위원 할 생각도 없어요.

○서영교 위원 그냥 지난번처럼 적당히 자연스럽게 나갔다 와요.

○위원장 정청래 퇴장하세요.

○서영교 위원 지난번처럼 적당히 하고 와요, 그러면 되지. 아니면 선진화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요.

○곽규택 위원 무슨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선진화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조배숙 위원 협박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경위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선진화법 위반이야.

○곽규택 위원 내가 언제 방해했어요?

○서영교 위원 뭐요?

○송석준 위원 누가 방해했어요?

○곽규택 위원 내가 언제 방해했어요?

○서영교 위원 아니, 퇴장하라는데 안 하잖아.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법으로 가 봅시다.

○서영교 위원 그게 무슨 강제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겠지.

○곽규택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하는지 봅시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송석준 위원 직권남용죄예요.

○곽규택 위원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이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 질문합시다.

○**곽규택 위원** 지금 경위들께서 저 끌고 나가면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진화 법 위반으로 다 고발할 거예요. 대법원 판결할 겁니다.

○**박은정 위원** 하세요.

○**장경태 위원**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건. 하나도 안 무섭네.

○**박은정 위원** 고발로 흥한 사람 고발로 망해요.

○**서영교 위원** 그것은 무고고, 무고. 여러 가지에 걸려.

○**김용민 위원** 하세요, 1심 6년 걸릴 거야.

○**위원장 정청래** 일단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한 10년 걸릴 거야, 아마.

○**서영교 위원** 선진화법 위반, 무고 이렇게 다 걸려, 곽규택 위원.

○**위원장 정청래** 일단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장경태 위원 질의하세요.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9시 4분에.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활비 부분은 모자란 부분이 있겠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 12월 자료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금액만 나왔는데 이것은 특활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지요.

이게 특경비 예산입니다. 23년 예산 466억 중 5억 8000만 원, 1.25%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이것 제출했습니다. 1.25% 제출했습니다. 이 내역대로 100% 제출하셨으면 전 제출했다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5% 제출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자료를 드리면서 다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아니요, 제출 안 하셨고요. 1.25% 제출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또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자비 지출 내역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자비를 지출하셨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러니까 제가 그것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현재 대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자비를 지출하시면 이것 증빙하실 수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 요지는 아시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그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자비 지출하면서 하다못해 사석에서 ‘너무 힘들었다. 자비까지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대전지검의 남재현 검사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장경태 위원 특수본에서 박성재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이분이 29일 사의 표명하셨어요. 혹시 외압 행사하셨습니까? 사퇴하라거나 주변에서 주변 경로로? 그런 적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 사의에……

○장경태 위원 본인은 안 하셨다고, 관여한 바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이 증언을 듣고 싶었고요.

천대엽 차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판결문 잘 읽어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선고 나기 전에 판결 선고 내용은 아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장경태 위원 알 수도 없으셨지요?

혹시 선고 내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의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 두 군데에 걸쳐서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충돌하게……

○장경태 위원 저는 최고법원의 권위와 법관에 대한 존중, 옳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는 또 어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정말 이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고 경제 재건을 바라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이,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다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을 수령 속으로, 국가를 대혼란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정질서가 겨우겨우,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헌법이 정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헌정질서가 지금 어찌 보면 회복돼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또다시 헌법 불능 상태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제 10 대 2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조희대·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임명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대법원의 재판의 기조는 ‘돈은 뚫고 말은 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부정한 정치자금이거나 기부행위 제한 등에 걸리면 문제를 심각하게 삼아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자는 것이 정읍시장 판결부터 해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중에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분들은 작

년 정읍시장 판례에 참여한 대법관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했던 얘기도 뒤집고 있습니다. 전 대법관들 정도 되시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대법관은 정말 최고 권위의 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리·법률은 개별적인 사건에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론에……

○장경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의 부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심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이것은 다 불가능하다. 정말로 법관이든 법조계든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천지 다 한번 보십시오.

사건 배당 당일에 이례적으로 저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이를 만에 합의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이례적으로 합의기일도 지정하고 9일 만에 두 번 심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과연 성실하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독 선거 개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 있는지를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2조에 의해서 합의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되고요, 7조에 의해서 재판연구관들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전에 지정 안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장경태 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내규조차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규 단서에 그와 같은 예외가 있다는 부분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예외를 계속 적용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례가 지금 또 다섯 번에 일곱 번 더 겹치고 있네요? 재판연구관의 조사·연구 결과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처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장경태 위원 9일 만에 두 번 심리하고, 그러면 두 번 심리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3심의 결과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심사숙고라는 말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9일 만에 심사숙고가 가능합니까, 두 번 심리 만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법사위의 법무부 요구 자료인데요.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만 쪽을 지금 6일, 소위 선고기일 지정으로만 따지면 6일 만에 선고하신 것인데 하루에 1200페이지씩, 이것으로 따지면 거의 39권을 6일만에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루에 4권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대법관님들 똑똑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루에 4권, 6일 만에 33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6일 만에 33권을 읽습니까? 저희가 사시 공부할 때 1회독 2회독 다 해 보지만 이런 책을 어떻게, 이 책을 하루에 4권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규를 지켰는지 그리고.....

○위원장 정청래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두 번 심리하고 나서, 이례적인 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답변해도.....

○위원장 정청래 예,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규 자체에 그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면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27일 날 바로 상고가 제기되었고 그리고 나서 즉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치면 34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의견 보충의견을 보면 대법관님들께서 접수되는 대로 자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경과라든지 또 내규의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공선법에 따라서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수의견의 논리에는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인 견지에서 절차 진행에 좀 문제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한 9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충실히 심리·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위원 이제는 많은 법관 후배들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퇴장하세요. 곽규택 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 조배숙 위원 좀 자제해 주세요.

○ 위원장 정청래 경위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 퇴장 조치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우리는 우리 눈으로 퇴장당하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경위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우리 입법 역사상, 현정사상 최초의 이런 위원회 강제퇴장 조치는 위원장님 자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자, 경위들께서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알려 줄게요.

법에 퇴장 조치는, 의장만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경호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퇴장을 명할 수 있는데 만일 경호권 행사가 판단될 때는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아마 나랑 똑같은 것을 틀었을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제가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 유상범 위원 662페이지 제일 윗단이겠지.

○ 위원장 정청래 제가요 다 보고 합니다.

○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누가 말 같은 것으로 서로 간에 불편하다고 퇴장을 시키냐고.

○ 위원장 정청래 ‘위원회는 위원회의 질서를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거나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경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가 다 압니다. ‘경호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에게 경호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위들에게 퇴장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어요?

○ 송석준 위원 밟아 주세요.

○ 유상범 위원 하세요. 그리고 지금 누가 말 가지고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24년 12월 16일 날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이재정 위원에게 퇴장 명령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에서.

○ 위원장 정청래 장경태 위원, 다 알고 있고요.

○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 위원장한테 따지세요!

○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들으세요. 제가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의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경위들이 꽉구택 위원을 강제로 끌어낼 수 없어요. 몸에 손대도 안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상범 위원 그런 얘기 그만하고.

○ 송석준 위원 끌어낼 수 있다며.

○ 유상범 위원 아까는 끌어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국회법에 위원장의 퇴장 조치, 경위들이 와서 자꾸 퇴장하라고 말로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를 벌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진행합시다.

○송석준 위원 아니, 여기가 학원 강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답답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경호권 행사하러 온 거예요?

○유상범 위원 뒤로 가 계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 여기 권한 없이 와 있잖아요. 나가세요.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요, 송석준 위원!

○송석준 위원 우리 회의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퇴장하세요.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 조용히 해, 조용히.

○송석준 위원 퇴장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 앉아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퇴장하세요! 지금 분명히 들었잖아요. 의장의 권한이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경호권을 함부로…… 여러분들 지금 불법에 걸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자, 경위들도……

○유상범 위원 자, 거기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저리로 가 계세요. 뒤에 안 서 있어도 돼. 저쪽에 계세요. 저쪽으로 가 계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뒤에 안 서 있어도 됩니다. 저쪽으로 가 계시고요.

송석준 위원이 그런 것을 명할 권한이 없어요. 저분은 항상 권한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송석준 위원 나는 이 방의 구성원으로서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우리 선배님, 이럴 때 제대로 질서 좀 잡아 주세요.

○박지원 위원 질의 방해하지 말고 앉아요, 앉아. 자기만 앉으면 돼.

○송석준 위원 잘 모르고 아무 때나 경호권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 송 위원이 앉으면 된다고.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도 경고당하기 전에 앉아 주세요.

○송석준 위원 경고 주세요. 제가 우리 동료가 퇴장당한다면 경고 열 번도 받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도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 예, 주세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유상범 위원 경고 계속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조배숙 위원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1차 경고합니다.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기분이 나쁘다고 마구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뭘로 보겠어요?

○**조배숙 위원** 너무 그렇게 경고를 남발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서로 경우를 지켜야지요.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초선 때 문공위원 하고 2·3·4·5선 전부 법사위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법부를 위해서 협력을 했는가는 잘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저희대 대법원장님도 저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법원장이니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12명의 대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앉아 가지고 정치재판, 이재명 죽이기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복은 벗어 던지고 정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사건이 있어도 정치재판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있을까요?

처장님, 정치재판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지원 위원** 오늘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대 대법원장님과 연수원동기인 강금실 위원장께서 ‘어떻게 저렇게 저러한 판결을 이재명의 낙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선대위원장입니다. 대법원에서 얼마나 졸속 심판을 했는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계엄 때도 그런 재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재판도 계엄하에서도 대법원에서 113일을 심리를 계속했지만 군부가 대법관들을 압박해서 113일 만에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죽이는데 대법원이 며칠간 재판했어요?

처장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 그리고 27일 날 상고장 제출로부터 친다고 하면 34일 정도 기간이……

○**박지원 위원** 34일이고, 전원합의부로 와서 며칠 만에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9일이 경과한 것으로……

○**박지원 위원** 졸속 재판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지원 위원** 아까가 아니라, 대법관도 국민의 상식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난 3년간 차기 대통령후보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더욱이 민주당원과 국민경선으로 88.7%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후보로 뛰고 있는 분을 아홉 시간 만에…… 김재규보다 더 나빠요?

김재규는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현역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가원수를 시해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113일을 심리했지만 결국 대법원이 신군부 전두환·노태우에 굴복해서 113일 만에 판결을 했다…… 어떻게 9일 만에 하는 것을 졸속 아니고 정치재판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석연 위원장의 질규를 듣고 제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사법부를 위해서 옹호를 했는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오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서류가 송치됐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제 저녁에 안 한 것만은 진짜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물론 언론 보도입니다—서울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16일 걸린다.

물론 또 처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고등법원의 재판기일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9일 만에 했다고 하면 그 생각이 고법에도 전달될 것 아니에요? 마치 인혁당 대법원에서 판결 나자마자 사형시켜 버리듯 그러한 제2의 음모가, 사법부의 쿠데타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판결……

○박지원 위원 얼마 동안에 할 거예요, 고등법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

○박지원 위원 말이 됩니까? 입이 100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법복을 입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관들이 국회의원 배지 붙이고 재판하고 있어요. 그 법복 저를 주세요. 저를 줘도 그렇게 재판은 하지 않아요. 절차는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6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안 보고 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관을 중원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것,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반대하는 대법관의 중원을 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그 단초를 조희대 대법관이 가져왔다는 것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대법관 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은 대법관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권리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 드릴게요.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알고 계시지요?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저희들도 차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또 하나, 대법관은 신이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위원장 정청래** 무오류 있을 수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청래** 법관은 무오류입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언제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만 위헌적인 판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현재로 다 보내야 되겠어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도 질의 시간을 이용하세요. 새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위원장 정청래** 새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새치기하고 있는 송석준 위원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이유로 끊임없이 이렇게 질의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요.

○**위원장 정청래** 빨리 질의나 하세요.

그리고 곽규택 위원은……

○**유상범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곽규택 위원은 퇴장하시라고 제가 계속 권고드리는 데 그러면 더 퇴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퇴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권고에 안 따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안 따르고 계속 괴롭게 앓아 계세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위원** 안 괴로워요. 위원장하시는 게 괴로우신 모양이네.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김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유상범 위원**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유상범 위원** 아니,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법률해석을 해야 될 만한 상황, 단계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법률해석은, 문자 그대로 이것 동의……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냥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만 답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

○**유상범 위원**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법률해석은 일반 국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할 때는 물론 검사가 하는 것이고 재판을 할 때는 판사가 하겠지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양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답하기 어려우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상한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멀쩡한 국민들을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선거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한 거예요.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본인은 죄를 짓고도 국민의 뜻에 반한다,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지금 법원을 공격하는 이 모습 굉장히…… 국민들한테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재명 대표가 금과옥조처럼, 주옥처럼 했던 얘기를입니다.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과거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2020년 6월 18일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7월 16일 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선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기록도 수만 페이지 안 되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만 페이지의 이런 기록들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

○유상범 위원 이 기록 대법관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연구관들이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 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면 5년 전의 대법관과 지금의 대법관은 뭐 달라졌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 그리고 판결을 했던 법관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똑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난번 30일 현안질의에 나오셔 가지고 ‘3월 27일 상고장이 제출되었고 그 직후 관리재판부가 배당돼서 선고일까지 한 달 넘게 상당 기간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전원합의에 회부된 지 9일간의 심리라는 게 결국 졸속 심리,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한 달 넘게 관련 기록을 관리재판부에서 충실히 검토했다는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번 다수의견 보충의견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또 각 재판을 담당하시던 대법관들에게 전부 다 공유가 됐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실히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과 4년, 5년 전에 이재명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재판의 진행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원에서 판결은 기본적으로 다 존중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존중이 돼야 되고 또한 대법관들에게 적어도 그와 같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재명 재판만 왜 이렇게 신속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공선법 사건을 보면 공소 제기된 게 2022년 9월 8일입니다. 상고심 접수가 2025년 3월 28일이에요. 2년 6개월간 1심·2심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진행된 재판이고 재판 지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체적으로 보면 지연된 재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신속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보면 공선법에 법원 송달만 미수령이 일곱 차례, 재판 불출석이 여섯 차례, 기일 변경 신청이 다섯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

청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재판 자연의 모든 꼼수는 다 쓴 겁니다.

이렇게 자연된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 자연이라고 한다면 1심부터 3심까지를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심·2심 재판 자연된 것은 짹득 잘라 놓고 대법원에서의 기간만 논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습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됐고 사실과 관련된 심리 미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판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1심에서 본 법리적 판단, 2심에서 본 법리적 판단이 어느 것이 제대로 판단한 것인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이 오래 갈 사안이 아니지요. 사실 심리 미진이 돼서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많은 논의가 필요했겠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 내용에 많은 대법관들이 사실은 두 번의 충실히 심리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수의견의 논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 논리가, 논거가 바로 신속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대법관들의 모습을 완전 일방적으로 편웨하고 그것을 지나서 법원을 겹박하는 이런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질의하세요.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천대엽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본인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듣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억울함이 있겠으나 적어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행정을 담당하는 처장으로서 또 대법관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판결이 90페이지에 가깝기는 하나 그중에 35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가까운 페이지 수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오경미·이홍구 대법관의 의견입니다. 이걸 가지고 숙고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와 같아……

**○박범계 위원** 페이지 수로 아까 숙고의 흔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천대엽 대법관답지 않습니다.

숙고의 흔적이 아니라 거꾸로 소수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합체 판결은 그러한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읽어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읽어 봤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설득과 숙고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견도 나름대로 이와 같아……

○박범계 위원 제가 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소수의견은 그 핵심에 있어서 실체 진실 발견과 그리고 6·3·3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열두 분의 이번 전합체 대법관들이 이 설득과 숙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재명 죽이기 재판, 이재명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절차를 훼손한 정치적 재판이다, 선거 관여 재판이다,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재판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 PPT 한번 보실래요?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사법부는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대법원장이 말했습니다, 휴어트. 적어도 이 재판이 공정하려면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 숙고의 시간, 상대방 설득의 시간, 일국의 대법관이라면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수의견이 얘기하듯이 우리 법원조직법은 선 소부 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라 법률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소수의견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세요. 이게 이재명 후보 피고인 대법원 나의 사건기록 조회 결과입니다. 다시 다음 보세요. 4월 22일 전원합의 기일 심리 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기는 하나 뒤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날 그것이 이루어졌다……

○박범계 위원 같은 날이지만 선후가 있지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보십시오.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말하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라고 하는 2부 배당이 나중입니다. 모르시지요? 어디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시지요? 이렇게 날림으로 한 재판입니다. 날림 공사예요. 아파트로 치면 100층짜리 아파트가 기초부터 허물어진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협력하여'라고 그랬어요. 대법관들이 소부로 가든 전합체로 가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서만에 의해서 전합체 소부 판결이라도 판결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래서 안 됩니다.

○박범계 위원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기록을 검토했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를 동안 어떻게 기록을 검토하냐고 얘기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을 뿐더러 소부를 먼저 지정했더라도 1시간 뒤에 전합체로 회부했어요. 그리고 그날 심리기일을 잡았고 하루 건너 다음 날 심리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날 합의가 됐어야지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판결문 만들어서 대법관들 열람을 하고 그래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사람 바보로 알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날림 판결입니다.

재판연구관만에 의해서 그 보고서만에 의해서 재판할 수 없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16일이 걸리니 우리 위원장께서 소설로 치면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합의가 아닌 번외의 합의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견을 유도하고 우격다짐으로 소수의견을 낸 두 분 대법관을 사실상 10 대 2로 몰아붙여서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은 우리 대법원이 스스로 종언을 고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수의견 보충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수의견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3월 26일 그리고 3월 27일……

○박범계 위원 왜 다수 보충의견만 언급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것이 저희들이 판결을 통해서 대법관들의 합의 과정이나 심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합의 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이 사건이 관리부에 배당되고 그 단계에서부터 아마 대법관님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전합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수의견 보충의견에 따르면 그처럼 처음 견건이 문서가 접수됐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검토했다는 그런 판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월 22일 날 비로소 그때부터 검토가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7분 넣어 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생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입니다.

대법관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법원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판의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많이 괴로워한 적 있습니까,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그렇습니다.

한 판사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 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천대엽 처장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정청래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다. 지금 누가 발언을 했는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문형배 판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 문형배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칭송이 자자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대법관들의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묻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문형배 판사가 고백하듯이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소장, 공소장에 있는 오탈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복붙을 한 그런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과거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건네준 쪽지에 의해서 검사 공소장대로 복붙을 해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지금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원장 정청래 그 대답이 아니라 ‘그 최종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판결의 오류의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습니다.

간첩 조작, 검사가 건네준 공소장 쪽지대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판단이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되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바로 사형당했는데 그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법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어렵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잘못된 판결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이곳에 와서 물었다면 조작된 간첩 사건 그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인혁당 재판 판결 후에 법사위가 열렸다면 그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은 누가 보상하지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인혁당 판결처럼 간첩 조작단 판결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판결은 비판·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권리 있습니다,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비판·비평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당연하지요.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그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쓰고 했습니까,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하여튼 그 당시의 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우리 대법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법원장은 왜 법원행정처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지요?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 12·3 내란 사태 때나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조항을 심

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헌법조항이 아닙니다.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비상사태에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법관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체포하려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시고 희망하시는 분 일단 손 한번…… 희망하시는 분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있는 분만 다 하지……

○박은정 위원 5분 하면 안 됩니까?

○유상범 위원 3분.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안 계신 분은 그냥 건너뛰도록 할 테니까 양해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부터 하세요.

○조배숙 위원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처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다가 이걸 삭제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들 봐라’는 빼고 ‘한 달만 기다려라.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이렇게 바꿨네요.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봐라?’ 하면 이건 사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대했던 판결이 아니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거는 뭔가 손봐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치주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과 또 그것 담당하는 법관들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법치주의와 또 더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하는 모든 헌법기관이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는 아주 위험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조배숙 위원 저는 우리 사회가 아주 위험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국가기관의 작용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집단의 뜻하고 다르면, 특히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마치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과거에 인혁당 사건 판결 이런 것까지 다 끌어와 가지고, 과거에 사법부가 잘못한 것을 다 끌어와 가지고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마치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해하고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저는 이 사회가 엄청나게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검찰을 굉장히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출속으로 했어요. 그때 가지고 오히려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차라리 고소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고소를 하면 계속 불송치 의견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피의자들한테 날개를 달아 준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 상임위로서, 법사위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끝나셨어요?

○조배숙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행정처장님, 제가 오전에 차장님에게 질문하기를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의 정적 조봉암, 그분을 대법원이 사법 살인을 하는 데 협력한 이후에 어제의 판결이 최악의 대선 개입 행위인 것 같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판결이 되게 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논리가 많은 판결문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을 일단은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6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재판 기록, 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에 이를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판결 선고는 9일 걸렸지만 합의 자체는 이를 걸린 것 같은데 대법관님들이 과연 그 기록을 다 읽어 봤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확인해 드린 바와 같이 스캔을 통해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에 대해서 접근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그리고 3월 26일, 27일 이 시점부터 거슬러 가서 이 기록을 갖다가 검토하고 또 숙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다수 의견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은 특정 연구관이 내용으로 보면 1심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복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다수 의견으로 삼아 버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제가 알고 경험하기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를 만에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아무튼 오전에 질문했으니까 묻어 두고……

다른 질문 가겠습니다. 형소법상 피고인의 상고 기간이 7일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기록 접수 통지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상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상고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재상고의 경우에도 7일, 20일이라는 규정은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에 정해져 있는 또 법에 준용되는 그런 규정 또 법리는 다 인정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대법원이 빨리 자격 박탈을 하기 위해서, 대선 전에 자격 박탈하기 위해서 법에 7일, 20일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불변기일로 기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재판을 해 버릴 수도 있는 법안인 것 같다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불신을 제기하는 분이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러던데, 행정처장님은 그걸 당연히 부정하시는 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제가 대리 진행을 할 때 직무대행하면서 딱 제 관심 사항이고 박균택 위원님 질의에 오늘 나오신 중에 그래도 천대엽 처장님께서 제일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상고나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과기환송에 따른 재상고, 재상고라는 것은 사실 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다 상고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대리 박범계** 똑같은 상고에 해당하는 거고, 다만 과기환송에 따른 다시 상고를 한다는 의미로 그냥 재상고라는 얘기를 편의적으로 쓰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이해하고 계시지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과기환송심에 따른 상고기간이라든지 또 상고이유서 제출에 대한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어서, 아까 처장님께서 준용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준용도 맞지 않는 것이 다 상고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불변기간을 대법원이 지키지 않고 상고심 판단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불변기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예, 불변기간입니다, 상고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하나 더 의문, 학자 중에 오늘 갑자기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상고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하자마자 소정의 기간에 상고심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서 제출의 기회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예, 주석집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단 판단한 거니까,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오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겠다 그런 일각의 주장이나 우려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취지는 같은 취지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어떤 취지로 적었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이 정도로 불신이 심합니다, 이 정도로. 법률에, 그것도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에, 절차기본법에 있는 조항 자체도 대법원이 지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국민적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것이 이 재판의 효과이고 영향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정말 놀라웠거든요, 법원행정처장님. 1심이 2년 2개월 걸렸을 때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탓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판사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 기록, 증거……

○서영교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내놓은 증인만 43명이었어요. 검찰이 증인으로만 세운 사람이 43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래 놓고 국힘이 1심 이재명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해요. 변호사 측에서 내놓은 증인은 4명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탓이에요, 검찰 탓이에요?

그리고 22일 전원합의체 하겠다고 하고 5월 1일 날 선고를 했어요. 단 9일 만이에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영교 위원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89.7%를 넘어서.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단 9일 만에 그렇게 2심에서 무죄 난 것을 뒤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들이 숙고하고 숙고하고 바르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관들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당겨서 합니까? 제가 1심 무죄, 2심 무죄 나고 3심 받았는데 선거법으로 혜위사실 유포로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원합의체로 그냥 마음대로 돌려서…… 그리고 9일 만에요, 아까 말했듯이 공판 기록만 2만 5000장 된다면서요. 그리고 백현동 자료는 6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짓말을 판결문에 썼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 날 원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왼쪽 사진처럼 했어요. 저 사진을 보고 이재명,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 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폐 가지고 보여 줬던 거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저거는 일부예요. 저 날 골프를 쳤나요, 이재명? 저 날 골프를 쳤을까요, 아니면 저 전날 골프를 쳤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대법원에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읽어 볼게요. ‘4명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길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폐 가지고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저 날은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저 전에도 골프를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재명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님, 대법관님은 법원행정처장이라 회피했지요? 대상이 아니지요, 대상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정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저런 내용을 국민에게 마치 ‘나는 골프 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처럼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리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압도적으로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사람에게 어떻게 9일 만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9일 만에 그렇게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전에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찾아보기 전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앞의 말만 띄우면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대법원처럼 판단하면 마치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만 자기 경험에는 없다고 그다음에 확신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대리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행정처장님, 저 사건이 4월 21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22일.....

○박은정 위원 21일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21일.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6만 페이지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요즘에는 형사기록 전자 사본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화가 되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21일 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다수의견,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자체 없이 읽어 보고 또 숙지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박은정 위원 아니요, 다수의견에 따른 보충의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대법관들은 문서를 읽어 봤다. 답변서·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상고이유서, 제출 문서를 읽어 봤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충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전부 다 보신다는 것이지요, 기록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심 대법관 그리고 다른 대법관들께서 이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기록에 대해서.....

○박은정 위원 그러면 21일부터 24일 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의견을 낸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합의가 되면 당연히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은정 위원 24일 날 의견을 내신 거예요, 대법관들이. 21일 날 전합에 회부가 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4일 만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6만·7만 페이지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그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하신 거라면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자기 개인들이 판결을 받을 거란 말이지요, 대법원에 대해서.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1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마치 엘 고어 사건을 넣으셨는데 엘 고어 사건은 당해 사건, 당해 대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이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판결은 비판과 비평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판결하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법관들, 대법관도 포함해서 각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박은정 위원 선거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정리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

---

○위원장대리 박범계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어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야당 위원님들이 하도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서 이게 사법 쿠데타다 이러니까 국민들도 헛갈리세요.

천대엽 처장님,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헛갈리실 국민들을 위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27일 날 검사 상고가 접수되고 그리고 27일 하루이틀쯤 뒤에 바로 관리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아마도 34일에 이르는 기간 중에 대법관들이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을 보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협의의, 어떤 법리에 관해서 치밀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절차적으로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6·3·3 원칙의 적용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호 공방 또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판결이 탄생했다고 판결 자체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종 대법원 판결 또 그것을 담당했던 법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송석준 위원** 6만 장이나 된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판결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더 엄중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이 야당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얼마든지 대법원 예산은…… 지난번에 검찰 예산, 감사원 예산은 깎았어도 법원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 쟁였고 조직도 늘려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운해할 분들 한 분도 없어서 이분들한테 무슨 악의적인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부분과 또 이 판결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결은 법관이 자기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또 판결을 내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이런 야당 위원들의 언성이 높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판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괜히 나중에…… 또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미리 좀 확실하게 판결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분명히 위헌적 법률 아닙니까? 재의 요구될 거예요. 그런데 재의 요구 못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 파괴행위이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내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 독재발 내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이런 위헌적 법률 탄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엄정한, 이 폐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위원 처장님, 지금 일부 위원들이 이 문제 지적을 우리 민주당에서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인정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분노하고 계시고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학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이라는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 김용민 위원 못 보셨어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 김용민 위원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 주세요, 주요 내용.

‘헌정의 중추기관인 대통령의 선거는 주권자가 직접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하면서도 드문 절차인데 말 몇 마디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을 통해 스스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법관들이 알량한 법기술적 판단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학자가 언론에 이런 기고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법원이 굳이 나서서 선거 한복판으로 들어갔느냐,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장님은 법과 양심 말씀하셨지만 그 처장님의 법과 양심이라는 말이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지금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긴급 간부회의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처장님도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지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 김용민 위원 무슨 논의 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직자 파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 김용민 위원 그런데 1시 45분경에도 회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회의를 계속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

기예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 공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공관이 이렇게 가깝네요. 수시로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

사실은 저도 안 믿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위원 장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것은 모르시는 거니까 장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당일에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말을, 발언을 꺼낸 분이 바로 저희 대법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판사가 대법원장에 ‘강력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공개적 경고를 안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일방 상정한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나온 배경은 현재 헌법 해석상으로는 대통령 되어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재판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여진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기억이 납니다.

○박준태 위원 그 답변 이후에 엄청나게 시달리셨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달리지는 않았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관으로서의 상식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 너무 괴롭힘당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84조요. 지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박준태 위원** 여기에서 소추의 개념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추가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소추 개념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도 하지 못한다 아니면 기소만 하지 못한다, 재판도 재판할 수 있다 없다까지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걸로 인한 논란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논란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식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견해가 달랐는데 이런 논란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소추 면제권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헌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장관님, 보세요. ‘소추’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과 소추라고 적시돼 있지만 그 의미를 광의로 해석해서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추라는 단어 자체에는 공판절차, 그러니까 재판이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추기관이라고 하면 소추기관에 법원이 들어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표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률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학술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해서 논란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태 위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추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헌법을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답변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00페이지 자료제출 답변서인데요. 7만 쪽을 6일 만에 다 읽어 보려면, 이게 233권 나옵니다. 하루에 39권 정도, 하루에 이 39권 사건기록을 성실하게 다 봤다 할지라도 속독을 하거나 발췌독을 하거나 혹은 요약만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루에 이것 39권을 볼 수 있습니까? 1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똑똑하신 지고지순한 대법관님들께서는 한 3권까지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기록의……

○**장경태 위원** 사실 대법관님들 주장하시는 게 ‘믿어 주십시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눈이 10개 달렸습니까? 이 39권을 어떻게 하루 만에 봄니까?

이런 말은 안 맞잖아요. 아마 ‘물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그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 편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장경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거다’. 12·3 계엄에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비상계엄 해지 못 했으면, 내란 진압하지 못했으면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대법관님들도 거기 앉아서 지고지순하게 판결을 내리실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산하에 휘하로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서 형소법 379조의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하는 건 피고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상고이유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20일은 보장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하도 말이 바뀌고 내규도 안 지키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켜져야 되지요, 20일은? 상고이유서 제출이 법에 있으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에 정해진 건 전부 다 지켜져야 됩니다.

**○장경태 위원**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157조,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할 수 있는 7일간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장경태 위원** 또 지금 대법원 내규 2조·7조 이런 것들은 다 안 지키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단서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장경태 위원** 단서에서 분리하셨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태 위원** 형사소송규칙 157조는 이유 불문하고 7일 지켜져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률과 규칙에 정해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들은 다 준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장경태 위원** 변화 불변한 규칙 아니겠습니까, 이것?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불변기간으로 보통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불변기간으로 표현하는데 대법원이 혹시나 또 지고지순한 높으신 분들이 7일, 20일 이것마저도, 20일은 아니더라도 7일 이 형사소송규칙에 대해서…… 방금 내규는 예외조항 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대법원장께서 판결하시면서 아주 중대하다고 마치 유죄를, 가이드라인까지 주시는 발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이것마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지키실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형사소송규칙 157조 꼭 지켜져야 되지요? 예외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과 법률이 모든 법관, 대법관이 준수해야 될 그런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하도 황당하고 비상식적이고 물상식한 일들이, 대법원이 안 지키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헌법학자들까지도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건 정말. 법대 1학년 학생도 알 만한 일을 이런 걸 안 지킵니까, 대법관들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범계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이 박지원이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승복해야 된다’ 늘 그랬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 번도 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죄 파기환송된 서울 고등법원의 재판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특혜 주지 마세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왜 이재명한테만 줘요? 대법원이 9일 만에 선고한 것은 대법원이 ‘친절한 금자씨’ 된 거예요, 이재명에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

○박지원 위원 몰라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결에 그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된 다수·소수의 의견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고법에서 받아서 사건번호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배당 안 됐다는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 되지 말고 똑같이 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만 9일 만에 뚝딱 때려 버렸냐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단초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개혁만 얘기했지만 사법개혁 할 겁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 대법관은 30명 내지 50명으로 증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화되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관들이 나서서 투쟁한 것도 없습니다. 국민이 학생이 민주당이 투쟁했습니다.

(박범계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개혁했습니다. 과거에는 월요일 날 국정원

IO들이 재판부에 가서 재판장 만나서 ‘영감님, 어제 무슨 변호사하고 골프 잘 쳤대요? 몇 타 쳤대요?’ 그 한마디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서 기었다는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지원이가 개혁해 가지고 지금 국정원 요원들이 사법부에 갑니까, 안 갑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본 적이 없고 와서도 안 됩니다.

○박지원 위원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런 세상을 만들어 준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나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도 사법부, 특히 검찰공화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시작해라 하는 얘기를 했지만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하고 거절했어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알아서 해 주세요. 절차를 지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피를 토하고 싶어요! 어떻게 대법관들이 국회의원 배지 붙이고…… 법복 박지원한테 주세요. 법복 입으면 제가 정치를 더 잘해요. 법복 입고 정치하려면 저를 주세요. 제가 법복 입고 정치를 해도 더 잘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예요! 결국 그분이 대법원을 망치게 될 겁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저도 재판받고 있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저도 죽을 각오로 싸우겠어요! 사법부 편 절대 안 듭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만약 윤석열이 계엄 성공해서 포고령 내렸으면 다 잡혀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지요.

○박지원 위원 고등법원에서도 이재명 후보만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특혜를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고등법원에서 해당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뉴스를 보고 좀 들어 보니 지금 해당 원심 재판부는 제외가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선거법 관련 고등이 재판부가 2개인가요, 나머지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다음에 대직 재판부로 아마 배당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의 한 재판부가 한 달간 어디 연수인가 떠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법조계에서 ‘갔다 와서 재판하면 될 일이다. 그 이유로 거기에 배당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박범계 위원** 배당됐어요, 7부로.

○**위원장 정청래** 7부로 배당됐습니까?

○**박지원 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바로 알아봤는데 배당 안 되고 사건번호만 받았더라고요.

○**유상범 위원** 내가 질문할 때만 되면 정청래 위원장부터 해서 계속 치고 들어오네. 그만합시다, 좀. 빨리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유상범 위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참 험악하게도 말을 하네요, ‘삼권분립 막 내려야, 사법부 없앨지도 고민할 시기’. 대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헌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없앨지도 고민한다는 이런 막말을 여과 없이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광기에 휩싸인 나라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1심·2심 재판 그렇게 지연될 때 단 한마디도 안 하더니, 신속재판하라고 하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법원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니까 이제 빨리 진행한다고 비난합니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국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나눠 준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보셨지요, 쳐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위원님 답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아직 덜된 단계라서 소위에서 아마 좀 검토하고……

○**유상범 위원** 검토가 많이 되고 덜되고에 큰 의미가 있지 않고 내용을 보시면 간단해요, ‘당선되면 당선된 날로부터 모든 사건의 공판절차를 정지한다’. 거기다가 경과조치가 또 재미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막겠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특정한 어떤 후보를 위한 이런 법안을 참 부끄럼 없이 내놓는 국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과거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진보 헌법학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상 불소추특권 범위는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재임 기간 이전의 소추까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임지봉 교수. ‘대통령이 됐다고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과 배치된다’, 노동일 교수. ‘이미 소추된 사실은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과 상관없다’, 전학선 교수. ‘금고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도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이 될 것이다’, ‘유죄 확정으로 법봉을 두드리는 순간 당선무효 효과가 발생한다’, 임지봉·김래영 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위헌적 법률

입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천대엽 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부 우선주의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전합체 회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사건기록, 나의 사건 검색에 전합체 회부가 먼저 돼 있다라는 그 부분을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이 주장하기를 소부의 2부에 배당했다, 그다음에 1시간 뒤에 전합체로 회부했다.

2부에 배당된 상태에서 혹은 배당되기 전은 사건관리부에 가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그것은 재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범계 위원 기록 접수 후 사건관리부 그다음에 선 소부주의 후 전합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 검색에는 틀림없이 선후가 바뀌어 있다.

사건관리부에 가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기 전 단계에서 재판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전원 대법관에게 제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건의 구체성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사건관리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보고서를 전 대법관 열두 분이 다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원칙적으로는 소부를 거쳐서 전합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전합으로 회부하는, 또 예전에는……

○박범계 위원 아니지요, 회부 전을 지금 묻습니다. 아까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회부 전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회부를 전제로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됐을 수도 있겠지만……

○박범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즉 어떤 결과를 정하고 하는 재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도 안 될뿐더러 2부라는 소부에 재판 배당을 했는데 1시간의 간격밖에 없지만 만약에 1시간이 아니고 적어도 며칠이라고 한다면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를 2부에 소속돼 있는 대법관 아닌 대법관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처음부터 해당 소부를 거쳐서 소부에서 논의한 다음에 전합에 회부하는 그런 정상적인 경우, 통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소부에서 그와 같은……

○박범계 위원 소부 대법관 아닌 분들은 볼 수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상범 위원** 이제 재판까지 특검을 하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어쨌든 이 사건은 판결이 죽 나온 걸 보면 처음부터 전합을 전제로 해서 여러 대법관님들이 서로 상의하고 또 다수·소수 의견 제출하고 공방을 벌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3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이란 무엇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이란 상식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고 상식이지요. 상식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보면 물이 가듯이 가는 것 그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대법관은 영어로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정의로워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과연 정의로운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소수의견을 냈던 분들의 절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 특정된 하나의 주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력과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다. 국가가 알 권리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

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등등등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독립운동 하듯이 저항을 했더군요.

저는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나쁜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명하고 뚜렷하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많은 법관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명예가 훼손될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것은 판사들만의 손해가 아니고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모든 법관들이 불철주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양 간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7일 날 10시 소위를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2시나 3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간사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차관 김석우

###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현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